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5년 4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와 과장 최미애(043-870-5510), 이해주 주무관(5517)

금은방 저울, 점검해 드려요.

- 소비자와 함께 금은방 저울을 시작으로 업종별 점검에 나설 예정 -

- 5월 본격적인 결혼 성수기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참여하는 금은방 저울 합동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.
 - 지난 3월 발족한 계량소비자감시원이 합동점검반에 참여하여,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본격적인 소비자 감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.
 - 국내 금은방 시장은 2013년 기준 5조 원 이상으로 예물시장 규모만도 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, 결혼 성수기 전 귀금속 거래에 정확한 저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눈으로 간간하게 살피게 된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: 성시헌)은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 결혼 예물구입을 위한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등 전국 3대 귀금속거리 및 귀금속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* 서울 종로귀금속거리(900개), 부산 범일동귀금속거리(300개), 대구 교동귀금속거리(300개), 대전·광주 금은방 밀집지역
 - 이번 합동점검 서비스는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단속과는 달리, 결혼 성수기 전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울을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.

- 저울 상태(영점·수평)와 오차를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인지 확인하여, 단순위반일 경우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, 불법 개조·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귀금속업소 뿐만 아니라, 소비자가 많이 찾는 회센터, 한약재시장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해서도 계량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.

- 붙임 1. 2015년 귀금속판매업소(저울) 합동점검 서비스 지침
2. 올바른 저울 사용법 홍보 유인물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와 최미애 과장(☎ 044-870-5510), 이해주 주무관(☎ 044-870-5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귀금속판매업소(저울) 합동점검 서비스 지침

① 배경

-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**결혼 성수기에 앞서** 단위 질량당 단가가 비싼 귀금속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**귀금속판매업소 저울의 정확도 관리**를 위하여 합동점검 서비스를 실시

* 귀금속판매업소 정밀저울은 F₁급 분동이 필요한 점검으로 최초 실시

② 합동점검 서비스 개요

- 점검 기간: '15.4.14 ~ 4.17(4일간)
- 점검 대상: 귀금속판매업소 상거래용 저울
- 점검 장소: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등 전국 3대 귀금속거리 및 광역시별 금은방 밀집지역

③ 합동점검 서비스 내용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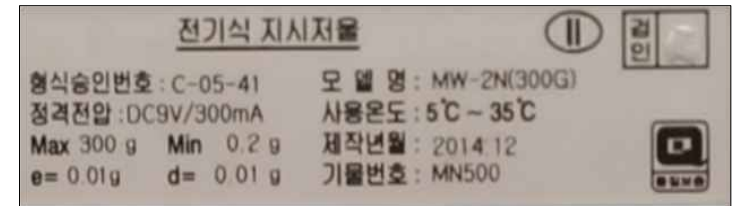
- 검정 및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

검정증인(KC마크)	검정필증	정기검사필증
		

- 설치 상태 확인
 - 사용 전 눈금을 "0"에 맞추고 계량하는지 확인
 -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
 -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확인
- 법정단위 사용 확인
 - 지시부가 법정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

- 사용오차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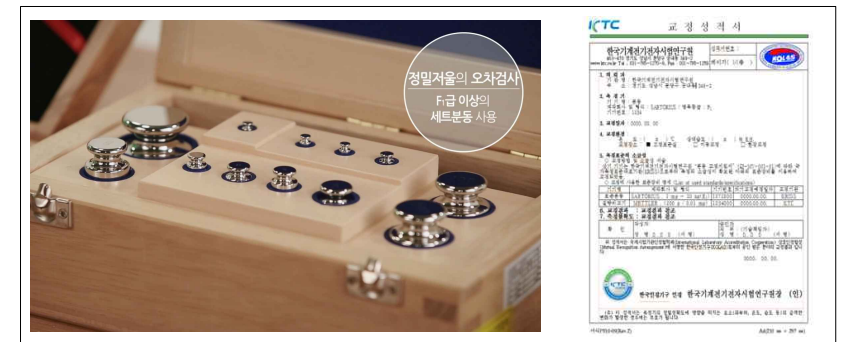
① 명판 확인



- * 최대용량: 300 g, 검정눈금: 0.01 g, 저울등급: Ⅱ 고급, 검정증인: KC압인
- * 제작년월: 2014.12(해당연도 또는 전년도 검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 면제)
- * 기물번호: 저울의 이름표로 반드시 기록

② Ⅱ 등급 저울 검사용 분동 준비(F1급)

- * 교정을 받은 F₁급 분동세트(1 mg ~ 1 kg, 검정기관에서 준비)



③ 검사 측정점 선정 및 사용오차 검사

- 검사 측정점 선정

- * Ⅱ등급: 5000눈금 이하, 5000눈금 초과 20,000눈금 이하, 20,000눈금 초과
- * Ⅲ등급: 500눈금 이하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, 2,000눈금 초과

- 사용오차 검사

- * Ⅱ등급 저울은 5000눈금 이하에서 1눈금, 5000눈금 초과 20,000눈금 이하에서 2눈금, 20,000눈금 초과에서 3눈금 이내에 있어야 함
- * Ⅲ등급 저울은 500눈금 이하에서 1눈금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에서 2눈금, 2,000눈금 초과에서 3눈금 이내에 있어야 함

검정 오차	검정누금 값 e로 나타낸 부하량 m의 값				사용 오차
	Ⅰ	Ⅱ	Ⅲ	Ⅳ	
$\pm 0,5 e$	$0 \leq m \leq 50\,000$	$0 \leq m \leq 5\,000$	$0 \leq m \leq 500$	$0 \leq m \leq 50$	$\pm e$
$\pm 1 e$	$50\,000 < m \leq 200\,000$	$5\,000 < m \leq 20\,000$	$500 < m \leq 2\,000$	$50 < m \leq 200$	$\pm 2e$
$\pm 1,5 e$	$200\,000 < m$	$20\,000 < m \leq 100\,000$	$2\,000 < m \leq 10\,000$	$200 < m \leq 1\,000$	$\pm 3e$

○ 부정계량기의 처리(계량법 제52조)

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의 “사용중지 표시증”을 부착하여, 부정계량기 사용을 방지



④ 합동점검 결과 처리 원칙

○ 단순위반(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)

- 정기검사필증이 없는 경우
 - * 검정이나 교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
-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
 - *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
- 비법정단위로 표시되는 경우: 법정단위 표시 명령(계량법 제6조제4항)

○ 부정계량기 사용자는 시·군·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따라 벌칙, 과태료 부과 및 표시명령 등 행정조치

- 중대위반(고의·중대 사항으로 행정처분)

- 명판에 검정증인(KC마크)이나 검정필증이 없는 경우
-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



- * 미검정 계량기 사용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* 비법정단위 표시 저울 사용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* 정기검사 미수검 저울로 사용오차 초과시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올바른 저울 사용법 홍보 유인물

정확한 계량으로
의심을 사라지고,
웃음을 커져갑니다!



상거래에는 검정·정기검사를
받은 저울만 사용하세요



봉인이 훼손된 저울은
사용하지 마세요



영점을 맞춘 후
사용하세요



안정된 바닥에 설치하고
수평을 맞춘 후 사용하세요



✓ 저울을 변조하거나 변조 저울을 사용하면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✓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하면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✓ 미등록자가 수리하거나, 봉인을 훼손하면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✓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02.3489.1300

KATS 국가기술표준원

KASTO 한국계량측정협회